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형의 효과: 억제 Vs. 야수화*

박 철 현**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1987년 민주화를 전후하여 행해졌던 5번의 사형집행의 효과를 살펴본다. 이 연구의 가설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고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주를 이룰 때,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범죄를 유발할 것이며, 정치적 민주주의가 성숙하여 흉악범에 대한 사형이 주를 이룰 때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를 위해 1970년에서 2007년 사이의 월별 살인과 강도자료를 이용하여 교차분석과 아리마 개입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형집행을 전후한 각 3개월간의 범죄율을 비교하는 교차분석에서는, 예측대로 1987년 이전의 사례에서는 사형집행 후 살인범죄는 증가한 반면 1987년 이후에는 사형집행 후 살인범죄가 대체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추세적인 요인과 여러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노이즈의 형태로 통제하는 아리마 개입 시계열분석에서는, 5번의 사형집행 중 4번의 사형집행에서는 아무런 유의미한 억제나 유발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7년의 사형집행은 살인범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이 효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 주제어 : 사형, 억제효과, 유발효과, 야수화, 아리마시계열분석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B00239).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사회학박사

1. 문제제기

최근 서울 용산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김모씨에게 기대했던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의 가족이 거세게 반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에서 사형은 매우 오랫동안 흉악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최후의 형벌로서 기능해 왔으며,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이러한 국가에 의한 사형이 피해자의 분노를 풀어주고, 흉악범죄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믿어 왔다. 아직 사형은 폐지되지 않았지만, 폐지에 우호적인 법관들은 당연히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이런 법관들에게 대해 “자신의 자녀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경우에도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겠느냐”고 절규하는 피해자 가족의 울분은 다시금 사형제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최근 종교계와 법학계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운동이 매우 활발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요지부동으로 국민 70% 내외가 사형제의 존속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의 한국갤럽의 조사는 국민 중 77%가 찬성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에 모 방송사의 심야토론 후의 여론조사결과 전체의 69.5%가 사형의 존치에 찬성을 했고, 다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는 전체의 65.9%가 사형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200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정진수 외, 2004)는 우리 국민 중에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전체의 11.2%에 지나지 않았고, 축소하여 유지되어야 한다가 51.4%, 현행유지가 31.4%,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가 6.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 국민 전체의 88.8%가 어떤 식으로든지 사형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사형제의 존치, 또는 현상태로는 시기상조론으로 나타나고 있다(2000년 이후 이러한 입장으로는 김상겸, 2004; 김인선, 2000; 김진혁, 2003; 신원하, 2002; 이훈동, 2003; 2002; 전지연, 2004; 황필홍, 2006). 이들은 대부분 사형이 형벌로서 갖는 응보나 예방의 기능을 포기하기 힘든 것이며, 국민대다수가 사형제의 존치를 바라는 현실에서 무책임하게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반면 즉각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김일수, 2002; 김천수, 2001; 박기석, 2001; 유석성, 2004; 윤종행, 2003; 이재석, 2000; 최선희, 2002; 허일태,

2000)은 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으며, 이것이 결국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국가가 지키지 못하는 한은 헌법에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형이 형벌로서 헌법에 모순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1962년에 처음으로 합헌으로 판단한 이후, 1967년의 판결, 1983년의 판결, 1987년의 판결, 1990년의 판결에서도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또한 1988년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이후 1990년과 1996년에 사형이 선고된 재소자들이 위헌심판을 청구했으나, 다수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듯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모두 일관되게 헌법에 위배됨이 없는 제도라고 판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사형제도가 갖고 있는 범죄예방 효과와 국민의 법감정을 그 판단근거로 들면서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당장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였다(전지연,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운동은 지속적으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2006년 4월에는 사형수 출신인 유인태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사형제폐지법안을 제출하고 국회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지만,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다수를 이뤄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시민의 신문 2006.4.8).

이처럼 학계와 정치계, 종교계, 실무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의 존치나 폐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벌여왔지만, 아직도 제대로 해결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형문제를 종교적 신념과 같이 양보하기 어려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배제한다면, 사형제의 존치 또는 폐지론의 근거는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폐지론의 근거로는 사형이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재판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형은 일반인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범죄예방 효과가 없으며, 사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 또는 구제의 관점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사형은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므로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사형존치론의 근거로는 사형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지며, 따라서 흉악범 등의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으로서 위하지 않으면 법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생명을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이며, 극악한 인물은 사회의 방위를 위해서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고, 적어

도 경찰이나 교도관과 같은 특정조직은 사형을 통해서 흉악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사형은 종신형보다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형의 폐지론 또는 존치론의 논리중 사형의 범죄예방효과는 공교롭게도 두 입장 모두에서 각각 그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다.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형의 범죄예방효과는 현재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전지연, 2004),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사형이 일반대중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형이 범죄예방효과가 없거나 적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뚜렷한 경험적 근거가 없이,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학계의 소모적인 논쟁은 실무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에 대한 합헌결정에서 나온 다수의견은 “사형이 가장 효과적인 일반예방방법으로 인식되어 왔고,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공극의 형벌로서 그 위하력(위협력)이 강한 만큼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하였다(강석구·김한균, 2005:116-117 참조).

반면 2005년 4월 6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의 의견서는 “사형을 폐지한 어떤 나라에서도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우리나라의 최근통계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한편으로 지나치게 잔혹한 형벌을 과다하게 적용하다보면 심리적인 역효과를 나타내 예방효과가 없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1999년 유재건의원이 주도한 사형폐지에 대한 특별법안이나, 2001년 정대철의원이 주도한 유사한 특별법안이나, 아니면 2004년 유인태의원이 주도한 사형폐지에 대한 특별법안 모두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사형제폐지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사형제를 폐지하려는 쪽이나 사형제를 유지하려는 쪽이나 모두 사형의 범죄예방효과를 그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형(집행)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사형이 살인범죄에 대해(최소한 단기간의) 억제(deterrence)효과를 가진다는 입장(Stack, 1987; Phillips, 1980; Ehrlich, 1977; 1975; McFarland, 1983)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사형이 별다른 살인범죄의 예방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살인범죄를 유발하는 야수화(brutalization)의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들(Cochran et al., 1994; Archer et al., 1983; Bowers and

Pierce, 1980)도 다수 있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사형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있지만, 정작 사형 제도의 폐지 문제가 사회적 핫이슈가 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찾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국의 범죄학의 저변이 이런 분야까지 살필 정도로 넓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책적 판단이 경시되는 형사사법 분야의 분위기가 그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사변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접근한다. 이 연구는 사형제의 폐지나 존치를 위한 연구가 아니며, 그보다는 이러한 공허한 사변적인 논쟁에 대해 경험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들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어떤 나라들은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형제가 각 나라마다 다른 국민의 법감정에 의해 유지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각 나라에 고유한 사형제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국내의 현실에서, 이 논쟁의 중심이 되는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국내의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외국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형의 효과는 일관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사형의 효과에 대해서 서로 매우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연구자의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 연구방법론상의 차이, 조사대상이 된 자료의 시기상의 차이 등을 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요인들만을 가지고 이렇듯 매우 상이한 연구결과들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아마도 사형의 효과가 매우 혼재되어 나타나는 데는, 사형과 살인범죄가 단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중요한 요인들에 의해 복잡하게 왜곡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사형이 살인범죄율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 약화되거나, 심지어 정반대로 왜곡된다면 사형의 효과는 아마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왜곡요인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에 주목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특히 후진 독재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요하고 국민들의 희생이 강요된다. 우리 사회도 과거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고, 역대 독재정권들이 이를 이용하여 반대세력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독재기반을 확보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사상의 차이로 인해서 사형의 희생자가 되어온 아픈 경험이 우리는 있다. 이런 형태의 사형은 분명 흉악범에 대한 사형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1987년은 분명 우리사회의 뚜렷한 분수령이 된다. 이를 계기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독재정권이 더 이상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장기집권을 선택하기 어려워졌으며, 우리 사회는 이제 민주화된 나라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강력했던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대형사고가 이어지고 지존파, 막가파, 온보현 등의 흉악한 범죄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의 문민정부는 이러한 흐트러진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오랫동안 유예되어 왔던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형태의 사형은 분명 정치적 신념의 차이를 이유로 한 사형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수준에 따라서 사형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국민들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가져오는 흉악범에 대해 국가가 단호한 자세를 취한다면, 그 국민들은 흉악범죄를 범했을 경우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될 반대급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가 그들의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 국민들은 아마도 국가의 극단적인 폭력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할 것이며 따라서 그 국민들은 야수와 같이 위험하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

2 . 이론적 배경: 기존연구의 검토

1) 사형의 효과에 대한 횡단적 연구

미국의 사형에 대한 횡단적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제도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의 살인율의 차이를 분석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를 분석단위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연구들은 보통 사형제도를 가진 주의 살인범죄율을 사형제도를 가지지 않은 인접주의 살인범죄율과 비교한다. 만약 사형이 억제효과가 있다면, 사형제도를 가진 주는 보다 낮은 살인범죄율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에르리히(Ehrlich, 1977)는 사형제도가 있는 주와 없는 주를 비교하여, 한 건의 사형이 20건 이상의 살인범죄를 줄인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형이 억제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금의 길이 또한 살인범죄율을 낮춘다고 지적한다(Ehrlich, 1977). 그러나 에르리히의 연구는 방법론적 근거에서 크게 비판받아 왔는데, 예를 들어, 사형제도의 유무로 주를 선택하는 것은 그 주들 사이에 사형 외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다(McGahey, 1980). 즉 사형제도보다는 이 다른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요인들이 살인범죄율의 차이의 원인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들은 주 자체 안에서도 항상 동질적이지는 않다. 또한 주들은 사형제도의 유무만 다르고 모든 점에서 동일하지는 않다. 게다가, 주의 관찰구역경계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사형제도의 가능한 확산효과(diffusion effect)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한 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웃 주의 사형제도의 시행이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은 법에 대해 모를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사형이 시행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사형집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아처와 그의 동료들(Archer et. al., 1983)은 이러한 사법관할구역의 경계 문제를 거론하고,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서 사형의 억제효과를 분석한다. 국가를 분석단위로 이용하는 것은 억제효과가 한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대신 나타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사실상의(de facto)” 사형제도 대신에, “법률상의(de jure)”, 또는 사형 법의 존재여부를 살펴본다. 아처와 그의 동료들(1983)은 억제효과를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 사형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몇몇 나라에서는 낮은 살인율과 관련되고, 다른 몇몇 나라에서는 높은 살인율과 관련된다. 이 발견은 다양한 추적기간에서 사실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살인율에 대한 다른 복잡한 영향들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충되는 결과는 국가들 간의 다른 요인들의 차이 때문이며, 사형제도의 영향 때문이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억제요인들을 배제하고 엄격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단순히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법의 실제 적용, 또는 확실성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2) 사형의 효과에 대한 종단적 연구

억제연구의 보다 일반적인 형태는 종단적 연구이다. 이것의 한 예는 사형집행을 전후한 살인율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에르리히(Ehrlich, 1975)는 한 초기의 논쟁적인 종단적 연구를 수행한다. 그는 살인과 검거, 유죄평결, 그리고 사형집행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각 사형집행이 7-8건의 살인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이 결과는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표와 같은, 많은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할 때도 지속된다고 한다(Ehrlich, 1975).

이 연구의 결과는 많은 비판을 초래했다. 이 연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에르리히의 연구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쟁점으로서 데이터의 선택과 변수의 조작화를 지적한다. 파셀과 테일러(Passell and Taylor, 1977)는 에르리히의 연구결과를 재평가하면서, 그 억제효과는 단지 1963년에서 1969년 사이에서만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이 연도를 제외하고 1933년에서 1962년 사이를 조사하면 아무런 억제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60년대는 살인율이 증가하고 있었던 반면에, 사형의 집행은 감소하거나 법령에서 제거되고 있었기 때문에, 억제효과의 발견은 필연적이었다고 한다. 파셀과 테일러(1977) 그리고 바우어스와 피어스(Bowers and Pierce, 1975)는 또한 방법론적 기법을 바꾸면 많은 에르리히의 유의미한 발견이 부정된다고 말한다.

에르리히 연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형의 억제효과는 이후에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필립스(Phillips, 1980)는 살인에 대한 사형집행의 효과를 주단위의 범죄자료를 통해 평가한다. 그는 사형집행 전과 사형집행 후를 비교한 후, 사형의 부과가 단기간의 살인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이 효과는 그 이후 살인이 증가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한다(Phillips, 1980). 사형집행은 살인을 없애기보다는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유사한 다른 연구(McFarland, 1983)도 필립스의 결과를 지지하는데, 맥파랜드는 미국에서 네 건의 사형집행의 효과를 살펴보는데, 그는 주단위의 살인율을 이용하여, 어떤 사형집행도 살인율에 억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길모어의 사형집행을 따라서 나타난 살인의 감소는 사형집행이 된 이후에, 동부와 남부에서의 나쁜 날씨를 통제하면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한다(McFarland, 1983). 이 연구들 둘 다 사형집행의 단기적 효과를 발견하며, 어떤 장기적 효과도 발견할 수 없었다.

데커와 코펠드(Decker and Kohfeld, 1984)의 연구는 일리노이주에서의 살인에 대한 사형의 장기적 효과를 분석한다. 그들은 1933년에서 1980년 사이의 일리노이주의 살인과 인구학적 자료들을 이용하여, 사형집행이 살인에 약간의 부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동시에 사회적 요인들은 살인의 수준에 보다 강한 관계를 나타냈다고 한다(Decker and Kohfeld, 1984). 나아가 스타크의 연구(Stack, 1987)는 더욱 강한 억제효과를 보고한다. 그에 의하면 16번의 매우 크게 보도된 사형집행이 큰 억제효과를 낳았고, 이것은 1950년과 1980년 사이의 30년 동안 무려 480명의 무고한 희생을 막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이리와 페터슨(Bailey and Peterson, 1989)은 스타크의 연구가 많은 개념정의상의 한계와 방법론적 한계를 갖는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이러한 한계를 수정한다면, 스타크가 발견한 억제효과는 매우 미약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의 연구 외에도 사형이 살인범죄에 대해서 억제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경험적 연구들은 많다. 예를 들어 베이리의 연구(Bailey, 1990)는 1976년과 1987년 사이의 사형집행에 대한 텔레비전 보도가 살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살인을 증가시키는 효과 또한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바우어스와 피어스(Bowers and Pierce, 1980)의 연구는 1907년에서 1963년 사이의 뉴욕에서의 사형집행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형이 오히려 살인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들에 따르면, 사형직후의 첫 달에는 2건 이상의 살인이 발생하며, 사형집행 후의 2번째 달에는 1건 이상의 살인이 보통 예상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사형의 1건 집행은 3건의 살인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바우어스와 피어스(1980)는 이것을 사형의 야수화 효과(brutalization effect)라고 말한다.

이렇게 사형이 살인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는 이후의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코크란과 그의 동료들(Cochran et al., 1994)은 2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가 다시 사형으로 회귀한 오클라호마주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살인(stranger killings)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형의 야수화효과는 이후 그 자료를 다시 분석한 베이리(Bailey, 1998)에 의해서도 역시 확인된 바 있다. 코크란과 챔린(2000)은 또한 1992년 해리스의 사형집행을 분석하여 면식살인의 경우 억제효과가, 비면식살인의 경우 유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계량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사형의 효과에 대한 분석에 참여하면서 대체로

사형이 억제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회귀분석을 이용한 종단적 연구결과들은 거의 모든 연구가 사형이 억제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예를 들어 Mocan and Gittings, 2003; Shepherd, 2004 외 다수). 이 결과들은 최근 미국에서 범죄율이 하락해 왔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셰퍼드는 다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미국의 방대한 주에 걸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대상이 된 27개 주 중에서 단지 6개 주에서만 살인에 대한 억제효과가 나타난 반면에, 13개 주에서는 오히려 살인을 증가시키는 유발효과를 냈다고 보고하였다(Shepherd, 2005).

이처럼 살인범죄에 대한 사형의 위험이나 사형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사형이 어떤 형태로든 억제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는 반면에, 억제효과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살인범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사형이나 사형의 보도가 살인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반대로 살인범죄가 사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Stolzenberg and D'Alessio, 2004)까지 제기되어 점점 그 혼란을 더해가고 있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가설

이 연구는 먼저 사형의 억제가설과 야수화가설 두 가지를 모두 테스트 한다. 억제가설은 사형의 선고나 집행, 또는 사형집행이 살인범죄를 억제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야수화가설은 사형집행이 살인범죄를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 사형은 살인범죄를 줄일 것이다(억제가설).

→ 사형집행건수가 많을수록 이 후의 살인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 사형은 살인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다(야수화가설).

→ 사형집행건수가 많을수록 이 후의 살인범죄는 늘어날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사형의 효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조건부가설을 테스트 한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은 소수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될 것이며, 이것은 국민들에게 폭력을 가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경우에 사형은 살인범죄를 억제하게 될 것이다.

◆ 정치적 민주주의의 정도에 따라서 사형의 효과는 달라질 것이다(상호작용가설).

→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 사형(선고, 집행, 보도)은 살인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다.

→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경우에 사형(선고, 집행, 보도)은 살인범죄를 억제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상, 중, 하나 4-5개 정도의 서열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충분한 변량을 가진 변수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사회의 경우 시민혁명이 있었던 1987년을 분기점으로 민주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87년을 전후하여 행해진 사형집행 중에서 비교적 이 연구의 연구관심과 잘 부합하는 사형집행 사례를 골라서 전후 간의 사형집행의 효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2) 분석사례의 선택

이 연구는 일종의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사례를 선택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이 연구의 중요한 주제인 정치적 민주주의에 따른 상이한 효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의 선택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1987년 이전에는 시국사

건이나 간첩사건, 정치범에 대한 사형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선택하였다. 우선 1987년에 너무 멀지 않은 사건으로서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무더기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범에 대한 사형으로서 널리 홍보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주제와 잘 부합한다고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민주화 이전의 사형집행으로는 박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의 사형집행을 선정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매우 초미의 관심을 받은 사건이었으며, 사형이 확정된지 단 4일만에 사형이 집행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 또한 당시 구명운동이 있었을 정도로 정치적인 요소가 강했고 널리 홍보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사례로서 선택되었다.

다음으로 1987년 이후에는 1989, 1990, 1991, 1992, 1994, 1995, 1997년에 각각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초기의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민주화에 대한 진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고, 1992년과 1994년의 사례는 1993년의 월별 범죄통계가 누락된 관계로 아리마 개입분석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민주화 이후의 사례로서는 1991년과 1995년 그리고 1997년의 사형집행 사례를 포함하였다. 다만 1994년의 사례는 교차분석에서만 부분적으로 이용하였다.¹⁾ 이 민주화 이후의 사형집행들은 모두 정치범이 아닌 지존파 등의 흉악범에 대한 사형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사형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차분석과 시계열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따라서 가능한 1945년 광복 이후의 모든 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비교적 제대로 된 통계수집이 시작된 1970년 이후의 월별 살인과 강도범죄건수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대검찰청의 자료는 1993년 한 해의 월별범죄통계를 모두 누락하고 있어 이 부분은 분석에 이용하지 못하였다.

이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분기점이 되었던 1987년을 전후한 전형적인 사형집행 사례를 선정하고 이 집행을 전후한 각각 3개월 간의 살인과 강도

1) 이 경우 1993년의 12개월간의 모든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서, 개입 이전 시계열의 분석에 9개월(사례)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시계열분석이 불가능하였다.

건수를 교차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 교차분석은 두 변수간의 2차원적인 관계만을 보여주므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분석이 필수적이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다변량회귀분석 방법을 검토하였다. 다변량회귀분석을 통한 시계열의 분석은 그 기법의 신뢰성에 대해 여러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설명변수의 효과를 뚜렷이 분리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다변량회귀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설명변수들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월별 자료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적은 사례수를 이용한 연도별 분석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형집행이나 선고의 효과는 연도 단위로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빨리 변하는 것이므로, 월별 단위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월별 독립변수 자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이 기법을 이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대안으로 이용가능한 방법은 월별 범죄율을 ARIMA 시계열분석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월별 살인 및 강도범죄율을 사형집행 시점을 전후한 시계열의 변화를 살펴보는 개입시계열분석(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이 분석의 장점은 여러 독립변수를 도입하지 않고서도 종속변수에 미치는 여러 독립변수의 효과를 백색잡음(white noise)화함으로서 비교적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개입시계열을 아리마모델을 통해 분석할 때 사용되는 박스-젠킨스(Box-Jenkins)의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절차를 갖는다. 첫째, 시계열을 개입 전과 후로 나눈 다음에 개입전의 시계열을 먼저 백색잡음화(pre-whitening)한 후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일원변량 아리마 모델을 찾아낸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차분(differencing)이나 로그화 등의 다양한 자료의 변환방법이 이용된다. 둘째, 전체 시계열을 대상으로 개입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이전함수(transfer function)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해석 가능한 이전함수 모델의 선택은 크게 1차 또는 2차의 이전함수를 갖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제한되며(McCleary and Hay, 1980:168-71, Cochran and Chamlin, 2000:697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도 이 세 가지 이전함수 모델을 검토하였다.

- (1) 갑작스런 영구적인 변화(Abrupt Permanent Change) - $f(I_t) = \omega_0 I_t$

(2) 점진적인 영구적인 변화(Gradual Permanent Change) - $f(I_t) = \frac{\omega_0}{1-\delta} I_t$

(3) 갑작스런 일시적인 변화(Abrupt Temporary Change) - $f(I_t) = \frac{\omega_0}{1-\delta} (1-B)I_t$

셋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적절한 모델이 찾아지면 그 모델의 진단을 하게 된다.

4. 분석결과

1) 사형집행과 살인 및 강도범죄

우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도별 사형집행건수와 살인 및 강도범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형집행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매우 활발히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에는 그 집행수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던 1997년까지 꾸준히 행해졌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살인율은, 특히 이것이 높았던 1967년의 2.7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1.2에서 2.0 사이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1999년부터 2.0 이상의 높은 살인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강도범죄율은 살인범죄율에 비해서 편차가 크며, 무엇보다도 최근까지 상당히 높은 폭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연도별 사형집행건수와 살인 및 강도범죄율

연도	사형집행a	살인율b	강도율b
1964	2	1.9	5.8
1965	11	2.0	5.4
1966	33	1.9	4.4
1967	3	2.7	3.6
1968	20	1.6	3.1
1969	33	1.8	2.6
1970	14	1.8	2.9
1971	9	1.9	3.2
1972	34	1.8	2.9
1973	7	1.3	2.4
1974	58	1.6	3.6

연도	사형집행a	살인율b	강도율b
1975	-	1.6	4.5
1976	27	1.6	3.8
1977	28	1.4	3.3
1978	-	1.3	2.8
1979	10	1.2	3.5
1980	9	1.4	6.2
1981	-	1.6	6.5
1982	23	1.4	5.8
1983	9	1.3	6.3
1984	-	1.4	7.0
1985	11	1.5	7.7
1986	13	1.5	6.5
1987	5	1.6	7.5
1988	-	1.4	8.2
1989	7	1.4	9.6
1990	14	1.6	9.8
1991	9	1.5	6.4
1992	9	1.4	5.8
1993	-	1.8	6.5
1994	15	1.6	10.0
1995	19	1.4	7.6
1996	-	1.5	7.9
1997	23	1.7	9.3
1998	-	2.1	11.7
1999	-	2.1	10.1
2000	-	2.1	11.4
2001	-	2.2	11.7
2002	-	2.1	12.5
2003	-	2.1	15.3
2004	-	2.3	12.0
2005	-	2.3	10.9

a: 한용순, 2001:59

b: 대검찰청, 범죄분석

이 표에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많은 사형대상이 되었던 경우는 남파간첩이나, 대통령/영부인 암살, 자생적 간첩행위(예를 들어 인혁당 사건), 사회주의 추종단체 활동 등의 정치적 범죄가 주로 사형집행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던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진전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는 주로 유괴살해범, 가정파괴범, 존속살인범, 강도살인범 등의 흉악범이 주로 사형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87년을 우리나라 민주화의 분기점으로 보고, 이전과 이후의 전형적인 사형집행 사례를 통해 사형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는 연구에서 선정된 주요 사형집행 사례를 전후한 각 3개 월 간의 살인과 강도건수를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우선 살인의 경우 민주화 이전의 사형집행과 이후의 사형집행 사이에 상반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987년 이전에는 사형집행 이후에 살인범죄가 늘어난 반면에, 민주화가 된 1987년 이후에는 (1997년의 사례를 제외하면) 오히려 사형집행 이후에 살인범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화 이전의 두 사형집행 사례에서 사형집행 전 3개월간의 살인건수가 각각 115건과 102건이었는데 비해, 사형집행 후 3개월간의 살인건수는 각각 159건과 133건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민주화 이후의 1991년, 1994년, 1995년 사형집행 사례에서는 사형집행 전 3개월간의 살인건수가 각각 161건, 195건, 169건이었다가, 사형집행 후에는 각각 134건, 155건, 155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7년의 사형집행 사례에서는 집행 전 3개월간의 살인건수가 187건이었다가, 집행 후 3개월 간은 24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가 IMF 경제위기로 인해 모든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꼭 사형집행에 의해서 범죄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강도범죄의 경우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1975년의 인혁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형집행과 1995년 지존파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강도범죄가 줄어들었지만, 다른 네 사형집행에서는 오히려 강도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 강도보다는 오히려 주로 살인범죄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개입분석은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표 2〉 주요 사형집행을 전후한 살인 및 강도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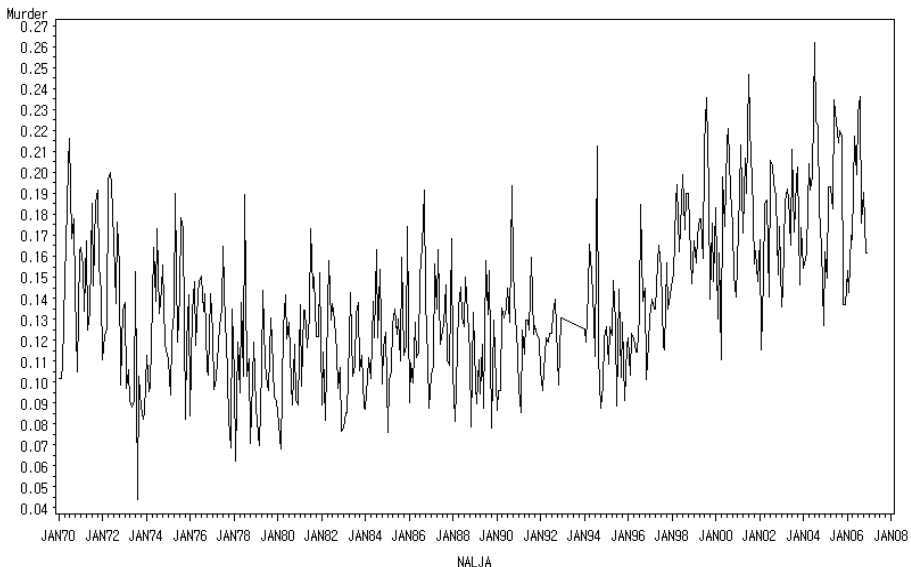
사형집행 사례		집행연월	살인범죄건수		강도범죄건수	
			사형집행전 3개월	사형집행후 3개월	사형집행전 3개월	사형집행후 3개월
이전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 사형집행	1975.4	115	159	514	385
	김재규 사형집행	1980.5	102	133	473	529
이후	홍악범 등 9명 사형집행	1991.12	161	134	590	697
	반사회, 반인륜적 강력사범 15명 사형집행	1994.10	195	155	857	1,046
	지존파 등 19명 사형집행	1995.11	169	155	859	852
	홍악범 23명 사형집행	1997.12	187	245	946	1,547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 살인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의 효과에 대한 시계열분석

앞서 살펴본 교차분석에 의한 2차원 관계를 토대로, 여기에서는 아리마 개입 시계열 분석(ARIMA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형집행 사례들이 월별 살인범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용가능한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1970년에서 2007년까지의 살인범죄율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살인범죄율은 1970년대 초반에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가,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대체로 매우 낮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고,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자료는 1993년의 자료를 누락하고 있어, 해당 부분이 부자연스러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래프 상에서는 이 누락된 자료들이 어떤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분석에는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

〈그림 1〉 살인범죄율의 월별 추이(1970-2007)



우선 민주화의 분기점이 되었던 1987년 이전의 두 사형집행사례들이 살인범죄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75년은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을 사형 집행한 것이며, 1980년은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에 대한 사형집행이었다. 이 사건은 신군부가 여러 소요사태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연장선상에서 행해진 사건으로 보는 것이 비교적 타당할 것이다. 당시 신군부는 광주지역에서 대규모 시위사태를 유혈로 진압한 직후였으며, 김재규의 사형이 확정된지 단 4일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여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해 9월에는 김대중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사형집행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검토된 개입모델은 영차 이전함수와 1차 이전함수들이다. 우선 영차 이전함수는 지속되는 갑작스런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입의 효과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일정하게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1차 이전함수들 중에서 전자는 개입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개입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곧 개입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의 분석결과는 이 논문의 예측과는 달리 1975년과 1980년 사형집행 모두가 아무런 유의미한 억제효과 또는 유발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1987년 이전의 주요 사형집행이 살인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입분석

개입모델		1975년 사형집행 ARIMA(0,1,2)	1980년 사형집행 ARIMA(1,1,0)
영차 이전함수	$f(I_t) = \omega_0 I_t$	$\omega_0 = -.001\text{NS}$	$\omega_0 = .00003\text{NS}$
1차 이전함수	$f(I_t) = \frac{\omega_0}{1-\delta} I_t$	$\omega_0 = -1.164\text{NS}$ $\delta = 1.399\text{NS}$	$\omega_0 = .002\text{NS}$ $\delta = -.869\text{NS}$
	$f(I_t) = \frac{\omega_0}{1-\delta} (1-B)I_t$	$\omega_0 = .007\text{NS}$ $\delta = .339\text{NS}$	$\omega_0 = .046\text{NS}$ $\delta = -.660\text{NS}$

***: p<.001, N.S.: Not Significant

다음의 <표 4>는 민주화의 분기점이 된 1987년 이후, 세 번의 사형집행이 살인범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1991년의 사례는 유흥업소 종업원 5명을

무자비하게 살인한 범인, 유괴살인범 등 흉악범 9명의 사형을 집행한 것이며, 1995년 사례는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조직원과 택시강도 온보현 등 19명의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그리고 1997년의 사례는 법정 증인살인범, 여의도광장 승용차 질주 살인범, 고소인가족 살인경찰관 등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다. 이 표에서 1991년과 1995년의 사형집행은 살인범죄율에 어떤 뚜렷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7년의 사형집행에서 지속적인 개입의 효과를 보여주는 (첫 번째 줄의) 영차 이전함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omega_0 = .0013^{***}$). 다시 말해서 1997년의 사형집행은 살인범죄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 모델의 진단 결과도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1987년 이후의 주요 사형집행이 살인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입분석

개입모델		1991년 사형집행 ARIMA(1,1,0)	1995년 사형집행 ARIMA(2,2,0)	1997년 사형집행 ARIMA(0,1,1)
영차 이전 함수	$f(I_t) = \omega_0 I_t$	$\omega_0 = -.002\text{NS}$	$\omega_0 = .002\text{NS}$	$\omega_0 = .0013^{***}$
1차 이전 함수	$f(I_t) = \frac{\omega_0}{1-\delta} I_t$	$\omega_0 = -.002\text{NS}$ $\delta = -.347\text{NS}$	$\omega_0 = .006\text{NS}$ $\delta = -.855\text{NS}$	$\omega_0 = .0002\text{NS}$ $\delta = .911^{***}$
	$f(I_t) = \frac{\omega_0}{1-\delta} (1-B) I_t$	$\omega_0 = -.012\text{NS}$ $\delta = .426\text{NS}$	$\omega_0 = .004\text{NS}$ $\delta = .945^{***}$	$\omega_0 = -.017\text{NS}$ $\delta = -.558\text{NS}$

***: $p < .001$, N.S.: Not Significant

요약하면, 이 연구에서 다른 모든 사형집행에서 살인범죄에 대한 유의미한 억제효과나 유발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1997년의 사형집행은 집행 이후 살인범죄율을 증가시키는데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사형집행들이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는데에 비해서, 1997년의 사형집행은 살인범죄를 유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논의 결과는 당초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출발했던 주제인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형의 효과에 대해 일정부분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기술적인 수준에서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사형집행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살인범죄율과의 이차원적 관계에 기초할 때, 1987년 민주화 이전에 행해졌던 사형집행은 살인범죄를 유발하는 효과를 나타낸 반면, 민주화 이후에 행해졌던 사형집행은 1997년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로 살인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사례들의 선택은 추세나 동향요인, 계절요인 등의 여러 가지 왜곡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아리마 개입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이러한 왜곡요인들은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는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유의미한 억제효과나 야수화(유발)효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것은 2차원 관계에서 나타났던 관계들이 추세나 계절요인 등을 통제하면 사라지는 허위관계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1997년의 대규모 사형집행은 살인범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이 효과는 지속적인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사형집행이 이루어질 당시의 한국사회는 IMF 경제위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사형의 효과를 나타낸다고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경제위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마 시계열분석이 단순하고 점진적인 추세는 차분(differencing)을 통하여 거의 완벽하게 통제해주시는 하지만, 지나치게 급격하게 나타나는 변화의 통제에는 한계가 있어보이기 때문에, 이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역사적인 흐름이 개입되는 종단적 분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한계 외에도 이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이 연구가 월별 범죄통계에 기초한 관계로 주단위나 일단위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이 연구의 결과는 잠정적이다. 향후의 연구는 주별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둘째, 또 하나의 자료의 한계로서, 현재 한국의 기본 범죄통계인 대검찰청의 범죄분

석은 집계양식이 변경되는 과도기인 1993년의 월별 통계 모두를 누락하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결측치에 취약한 아리마분석의 경우에 매우 문제가 되었고, 비교적 적은 사례들을 분석에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최초로 국내에서 사형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 자료를 통해 설명을 시도한 연구하는 점에서 그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이 분야에 더 나은 많은 추가적인 연구가 나타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Archer, D., R. Gartner, and M. Beittel. 1983. "Homicide and the Death Penalty: A Cross-sectional Test of a Deterrence Hypothesis".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74
- Bailey, William C. and Ruth D. Peterson. 1989. "Murder and Capital Punishment: A Monthly Time-Series Analysis of Execution Public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 Bailey, William C.. 1990. "Murder, Capital Punishment, and Television: Execution Publicity and Homicide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 Bailey, William C.. 1998. "Deterrence, Brutalization, and the Death Penalty: Another Examination of Oklahoma's Return to Capital Punishment" *Criminology* 36
- Bowers, W. J. and G. L. Pierce. 1975. "The Illusion of Deterrence in Isaac Ehrlich's Research on Capital Punishment". *Yale Law Journal* 85
- Cochran, John K. and Mitchell B. Chamlin. 2000. "Deterrence and Brutalization: The Dual Effects of Executions." *Justice Quarterly* 17
- Cochran, John K., Mitchell B. Chamlin, and Mark Seth. 1994. "Deterrence or Brutalization: What is the Effect of Executions?" *Crime and Delinquency* 26
- Decker, S. H. and C. W. Kohfeld. 1984. "A Deterrence Study of the Death Penalty in Illinois, 1933-1980".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2
- Ehrlich, Isaac. 1975. "The Deterrence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A Question of Life and Death". *American Economic Review* 65
- Ehrlich, Isaac. 1977. "Capital Punishment and Deterr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 McFarland, Sam G.. 1983. "Is Capital Punishment a Short-Term Deterrent to Homicide?: A Study of Effects of Four Recent American Execution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74
- McGahey, R. M.. 1980. "Dr. Ehrlich's Magic Bullet: Economic Theory, Econometrics,

- and the Death Penalty". *Crime and Delinquency* 26
- Mocan, H. Naci and R. Kaj Gittings. 2003. "Getting Off Death Row: Commuted Sentences and The Deterrence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XLVI
- Phillips, David D.. 1980. "The Deterrence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Evidence on and Old Controvers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
- Shepherd, Joanna M.. 2004. "Murder of Passion, Execution Delays, and the Deterrence of Capital Punishment." *Journal of Legal Study* 33.
- Shepherd, Joanna M.. 2005. "Deterrence Versus Brutalization: Capital Punishment's Differing Impacts among States." *Michigan Law Review* 104
- Stack, Steven. 1987. "Publicized Executions and Homicide, 1950-198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 Stolzenberg, Lisa and Stewart J. D'Alessio. 2004. "Capital Punishment, Execution Publicity and Murder in Houston, Texa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94
- 강석구 · 김한균. 2005.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상겸. 2004. "사형제도는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 국회보(국회사무처) 제455호
- 김인선. 2000.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그 위헌성 여부," 교정(법무부) 제287호
- 김일수. 2002. "사형,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시민과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통권 제96호
- 김진혁. 2003.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한국교정학회) 제21호
- 김천수. 2001.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접근," 철학논총(새한철학회) 제26집
- 박기석. 2001.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2권 제3호
- 신원하. 2002.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 사형제도에 대한 신학윤리적 검토," 고신 신학(고신신학회) 제3호
- 유석성. 2004. 사형과 인간의 존엄, 한들출판사
- 윤종행. 2003.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3권 제2호
- 이재석. 2000.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8집 제2호

- 이훈동. 2002.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교정연구(한국교정학회) 제16호
- 이훈동. 2003. “사형의 집행유예제도와 형사정책적 의의,” 교정연구(한국교정학회) 제20호
- 전지연. 2004.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제도,” 비교형사법연구(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6권 제2호
- 전지연. 2004.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제도,” 비교형사법연구(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6권 제2호
- 정진수, 최인섭, 이천현, 박형민, 황지태. 2004.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I) :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선호. 2002.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한국법학회) 제9집
- 한용순. 2001.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사형집행현황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허일태. 2000.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우리의 임무,” 비교형사법연구(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2호
- 황필홍. 2006. “되값는 정의로서의 사형제,” 철학연구 제72집

Political Democracy and the Effects of Capital Punishment : Deterrence Vs. Brutalization.

Park, Chul-Hyun *

Deterrence researches have been one of most controversial areas of various criminological fields. Of them, the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has been more controversial area than any other fields, because of its various issues, such as moral, religious and methodological issues. These many disputations can be also an evidence that the effect of death penalty is effected by any other various factors.

This study focuses on one factor of political democracy, that can distort on deterrence effect with various ways. On past, in Korea, there are a rapid political progress, specially, before and after 1987. Before the democratization of 1987, there were many executions of political criminals in Korea. But, in recent, all executions have been on street criminals.

This study predict both deterrence and brutalization effect; i.e. there will be deterrence effect in democratic society but brutalization effect in non-democratic society. To test these hypotheses, the monthly data(1970-2007) were used in analysis. In crosstabulation comparing 3 month of pre-intervention with 3 month post-intervention, our hypothesis was supported such as prediction. But the result of ARIMA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shows that, of the five executions, only one execution significantly increased murder rate and also its' effect was persisted in long term. And then some its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Eui University, Ph.D. in Sociology

❖ Key Word : Capital Punishment, Deterrence, Brutalization, ARIMA Time-Series Analysis